

# 2026년 제18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 *The Case Concerning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Related Issues between Atomia and Radonich* (Atomia/Radonich)

### 사실관계

1. Atomia는 유라시아 대륙 남서지역에 위치한 내륙국으로서 여러 국가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동쪽으로는 Radonich, 남서쪽으로는 Strelia, 남동쪽으로는 Demeron 등과 각각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Atomia는 인접한 3개국(Radonich, Strelia, Demeron)과 국경분쟁을 간헐적으로 겪었다. 반면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3개국은 정치적·군사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 특히 1969년 5월 1일 그들이 상호방위를 골자로 하는 실질적인 군사협력기구를 새롭게 설립한 이후로, Atomia와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되었다.

(지도)



2. 한편 이러한 지정학적 이유로 Atomia는 자국의 안보환경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할 장기적 생존전략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1970년 1월부터 Atomia는 비대칭전력인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3. 1980년대 초반 국제사회는, 제3세계 국가의 운반체(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우려하여, 핵비확산체제의 보편화를 강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떠밀려 1983년 9월 1일 Atomia,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4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 선언」을 채택하였다. 동 「원자력 선언」에는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핵무기비보유국의 지위로 「핵무기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도 두고 있었다. 따라서 1984년 4월 1일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3개국이 「NPT」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동 조약 제3조에 따라 1985년 1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4. 1985년 6월 1일 Atomia도 「NPT」에 가입하고, 동년 7월 1일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안전조치협정」에는 핵시설의 설계 정보의 제공, 핵물질의 계량 기록 및 핵시설의 조작 기록 유지, 핵물질의 주기적인 계량 보고의 제출, 사찰의 수용 등에 관해 규정하고, 특히 특별사찰과 관련하여, “특별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사찰만으로써는 IAEA의 사찰 업무에 관한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IAEA 자체의 결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5. 1987년 1월 30일 이후, Atomia는 IAEA에 자국의 핵시설에 대한 설계 도면을 제출하고, 핵물질의 계량 기록을 보고하고, 일반사찰을 수용하는 등 상기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해 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IAEA의 사찰 팀(team)이 Atomia의 핵개발을 의심하였고, 또한 제출된 핵물질의 계량 기록에 특이점을 발견하였다. IAEA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Atomia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tomia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IAEA의 사찰 팀이 “Atomia의 북동부지역의 특정 시설단지에 우라늄농축가동시설이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특별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1일 IAEA는 Atomia에게 특별사찰을 요구하였고, 동년 11월 1일 IAEA 집행이사회도 ‘특별사찰의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 특정 시설단지는 IAEA에 신고 되지 않은 것이었다.
  
6. 이에 대해 Atomia는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 특정 시설단지가 군사적 연구시설로

서 우라늄농축과 무관하며, 또한 그곳이 자국의 전략적 요충지라서 자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논란이 된 Atomia의 북동부지역에는 공군기지와 미사일 기지 등도 함께 배치되어 있는 군사 도시였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Atomia는 상기의 특별사찰의 요구가 자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고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려는 시도로서, 종국적으로 자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7. 특별사찰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Atomia와 IAEA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1992년 3월 1일 Atomia의 외교부는 「NPT」 제10조를 근거로 동 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동일자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NPT」의 각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통보하였다. “IAEA의 특별사찰 요구가 ‘자국의 최고 이익이 침해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기에 「NPT」로부터 탈퇴한다.” 「NPT」 제10조에 의하면, 탈퇴의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탈퇴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8. Atomia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해, Radonich, Strelia, Demeron 등은 그 선언이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핵확산의 방지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반면 Atomia는, 자국의 탈퇴 선언이 「NPT」 제10조에 따른 탈퇴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동시에 「NPT」 체제의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동 조약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자국의 탈퇴 선언을 정당화하였다.
9.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3개국 이 즉각적인 「NPT」로의 복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tomia가 그 복귀를 거부하자, 상기 3개국은 Atomia와의 교역을 중단하였다. 동시에 이들 3개국은 1992년 5월 1일 상기 군사협력기구 산하에 ‘화학무기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전담반의 목적은 비밀리에 화학무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전담반은 Radonich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Strelia와 Demeron 등 2개국이 개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10. 이러한 교역 중단에도 불구하고, 1992년 6월 2일 이후부터 Atomia는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치중하였고, 마침내 1995년 9월 1일 자국의 첫 번째의 지하핵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핵실험 직후, Atomia의 외교부는 해당 핵실험이 자국의 북서지역 산악지대의 지하에서 ‘폭발력 약 50 킬로톤(kiloton)’ 규모로 실시되었으며, 인접국으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는 등 성공적인 핵실험이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면 Radonich는 그 핵실험의 규모가 폭발력 150 킬로톤을 초과하였고, 동시에 상당량의 방사능 물질이 자국 영역 내에서 탐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IAEA는 자신의 지진관측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 지하핵실험의 규모를 폭발력

140~160 킬로톤으로 평가하였다.

11.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3개국은, Atomia의 상기 지하핵실험이 역내의 평화를 훼손한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한편 1996년 1월 1일 Radonich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화학무기의 개발이 완성되었음을 상기 ‘화학무기 전담반’을 통해 Strelia, Demeron에게 비밀리에 각각 통지하였다. 1996년 6월 1일 기준으로 Radonich는 상당량의 화학무기 및 그 운반체(미사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Radonich의 화학무기 개발 및 비축에 대해, 동년 9월 1일 유엔 총회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3개국은 1993년 5월 1일에 「화학무기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에 각각 비준하였다.
12. 반면 2000년 이후 Atomia는 3회의 추가적 지하핵실험을 수행해 왔었는데, 2016년 12월 8일의 지하핵실험이 마지막이었다.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3개국은 각각의 지하핵실험이 국제법의 특정 규칙과 그러한 규칙의 유추 적용에 의해 금지된다고 주장해 왔었다. 동시에 핵실험의 전면적 금지는 이미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Atomia에 대해 추가적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여러 차례 채택하는 등 Atomia의 지하핵실험을 규탄해 왔었다. 반면 Atomia는 지하핵실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보편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도 발효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불가피한 경우 지하핵실험이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13. 1995년 8월 1일 기준으로 Atomia,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4개국은 모두 1963년의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artial Test Ban Treaty, 「PTBT」)의 당사국이다. 또한 1997년 1월 1일 기준으로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3개국은 「CTBT」에 각각 서명·비준하였으나, Atomia는 1997년 2월 1일 동 조약에 서명하였지만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
14. 한편 Atomia와 Radonich는 1970년대 중반부터 운반체(미사일)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수차례 시험 발사해 왔고, 탑재중량과 사정거리를 꾸준히 향상시켜 왔었다. 2020년에 와서는 탑재중량 500kg 및 사정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 및 크루즈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trelia, Demeron 등 2개국도 Radonich와 동일한 수준의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2001년 10월부터 Atomia,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4개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참여해 왔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협의체로서, 무기

및 군사기술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중의 하나이다.

15. 2020년 11월 11일 Atomia는 ‘핵무장의 완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16. 2021년 1월 22일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를 규정하는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이 발효되었다. 2021년 5월 1일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3개국은 동 조약에 가입하였으나, Atomia는 동 조약에 서명은 물론 협상 과정에조차 참여하지 않았다.
17. Atomia의 ‘핵무장 완성’의 선언과 그 능력의 현대화, 「TPNW」의 발효, Radonich의 화학무기와 그 운반체(미사일)의 지속적 현대화 등 안보 관련 이슈로 인해, 2022년 들면서 유라시아 남서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특히 Atomia와 Radonich 사이의 갈등은 끝없이 증폭되었다. Atomia의 핵무장과 Radonich의 화학무기 운용능력의 현대화가 전운의 그림자를 안고 있는 형국이었다.
18. 2022년 9월 1일 Atomia와 Radonich는 그들의 국경에서 발생한 우발적 군사충돌을 계기로, 전면적 무력충돌로 나아갔다. 전기한 군사협력기구를 중심으로 Strelia, Demeron 등이 Radonich에 군수 물자와 군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기의 무력충돌 양상은 Atomia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Atomia의 전략적 요충지인 자국의 북동부지역의 일부가 Radonich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Atomia는 자신의 영토의 약 30%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19. 특히 인접한 Strelia, Demeron 등이 Radonich에 군수 물자와 군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특히 자국의 전략적 요충지가 함락되었다는 상황 등으로 인해, Atomia는 자국의 안위와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20.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12월 3일 Atomia는 Radonich의 수도 근처(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군사목표를 대상으로 핵무기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한 즉각적 반격으로서, 그 다음날 Radonich도 Atomia의 수도 근처(인구밀집지역)의 군부대를 목표로 화학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1. Atomia가 사용한 핵무기는 폭발력 20 킬로톤인 것으로, Radonich가 사용한 화학무기는 탑재중량 400kg 및 사정거리 400km의 크루즈미사일에 장착된 살상용 화학무기로 확인되었다.  
먼저 상기 핵무기의 사용은 반경 약 20km 내에 존재했던 사람과 물자에 대규모

적 희생과 파괴를 가져 왔으며, 또한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인적 손실도 야기했다. Radonich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자(전투원 및 민간인)의 수가 약 2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이었다. IAEA도 그러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기 화학무기의 사용은 반경 3km 내에 존재했던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는데, Atomia 정부는 그 피해 규모가 약 2만 명이라고 발표하였다.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도 그러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였다.

22. 이러한 핵무기 및 화학무기의 사용이라는 대재앙에 직면하여, 2022년 12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동 무력충돌의 즉각적 종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Atomia와 Radonich 양국은 모두 그 결의를 수용하였다.

23. 상기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반응은 아래와 같다.

먼저 Atomia는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극단적 상황 하에서의 핵무기의 사용은 자위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1996년 7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핵무기의 사용 및 그 위협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가운데 일부 결정을 자국 행위의 합법성 근거로 제시하였다. 즉 첫째 국제법은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 특별히 금지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핵무기의 사용은, 무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인 유엔 헌장 제51조 또는 국제인도법의 제(諸)원칙과 규칙 등과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Radonich는 「TPNW」의 발효가 핵무기 사용의 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명확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상기 권고적 의견 가운데 일부 결정을 그 위법성 근거로 제시하였다. 즉 첫째 국제법은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핵무기의 사용은 무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인 유엔 헌장 제51조, 국제인도법의 제(諸)원칙과 규칙 등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하다. 셋째 핵무기의 사용은 특별히 핵무기를 규제하는 특정 조약상의 의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핵무기의 사용은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제(諸)규칙에 일반적으로 반한다.

끝으로 핵무기보유국들과 비보유국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1945년 일본을 상대로 한 원자탄 사용 이후 약 77년 만에 핵무기가 다시 사용된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2023년 12월 1일 유엔 총회도 Atomia의 핵무기 사용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24. 상기의 살상용 화학무기 및 크루즈미사일의 사용과 관련된 반응은 아래와 같다.

먼저 Atomia는 Radonich의 화학무기 사용이 「CWC」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사정거리가 400km이기 때문에, 「MTCR」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Radonich는 자신의 화학무기 사용이 자위권의 정당한 행사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CWC」가 발효되기 이전에 화학무기를 개발·비축하였고, 사용된 크루즈미사일의 탑재중량이 200kg인 점 등을 강조하였다.

유엔 총회는 Radonich의 화학무기 사용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나, 크루즈미사일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25. 2025년 1월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재에 따라, Atomia와 Radonich는 평화 조약의 체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동시에 핵무기 및 화학무기의 사용 등 양국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판단을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Atomia와 Radonich는 동 사태의 해결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고, 2025년 9월 1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ICJ의 관할권을 수락하였다.

동 특별협정에는 ICJ가 다룰 쟁점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취지에서 기술된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청구취지에서 판단을 요구하는 쟁점 이외의 쟁점은 제외한다. 즉 2022년 9월 1일 발생한 Atomia와 Radonich 사이의 우발적 군사충돌에 있어서 공격의 선후에 따른 쟁점, 군수 물자와 군사 정보를 제공한 Strelia와 Demeron의 중립의무와 관련된 쟁점, 「MTCR」 이외의 운반체(미사일) 통제체제와 관련된 쟁점, 국제법상 국가책임과 관련된 쟁점 등은 제외한다.

둘째 ‘Atomia의 핵무기 사용의 국제법적 판단’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또는 적법성) 여부를 일반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셋째 ‘Radonich의 화학무기 및 크루즈미사일의 사용의 국제법적 판단’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화학무기 및 크루즈미사일의 사용의 위법성(또는 적법성) 여부를 일반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26. Atomia, Radonich, Strelia, Demeron 등 4개국은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원당사국이다.

27. 2026년 1월 1일 Atomia는 상기 특별협정에서 Radonich와 합의된 쟁점을 담은 본

사안을 ICJ에 제소하고, 동 재판소에 아래와 같은 청구를 제출하고, 그 판단을 요구하였다. Radonich도 동일자로 응소하였다.

### 청구취지

- (1) 1992년 3월 1일의 Atomia의 「NPT」 탈퇴 선언(탈퇴행위)의 국제법적 판단
- (2) Atomia가 수행한 1995년 9월 1일의 지하핵실험 및 2000년 이후의 3회의 지하핵실험 실시의 국제법적 판단
- (3) 2022년 12월 3일의 Atomia의 핵무기 사용의 국제법적 판단
- (4) 2022년 12월 4일의 Radonich의 화학무기 및 크루즈미사일의 사용의 국제법적 판단